

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【신홍식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3. 3. 27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12호로 2023년 3월 16일 신홍식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근거 법령인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을 목적 조항으로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,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지면 활자를 바탕으로 한 서적의 구매와 독서량이 저조해지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·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 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사업추진 근거 추가 및 지역서점 대상 구체화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독서문화 진흥조례」와 연계하여 계획수립 내용 추가(안 제5조)
- 다. 지역서점과 도서구매계약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사항 등 지원내용 추가(안 제6조)
- 라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.

다. 입법예고(2023. 3. 13.~ 3. 17./5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근거법령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지역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를 진흥하고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(목적)는 본 조례안의 근거규정인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7조의2를 목적조항에 명시하여 사업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한 조항이며,
- 안 제2조(정의)는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역서점의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, “1년 이상” 영등포구에 사업장을 두고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으로 하되, 제외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.
- 안 제6조(지역서점 지원)는 구청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도서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추가하고,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함.
- 안 제12조(협력체계 구축)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, 지역서점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.

○ 검토 결과

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서점의 요건을 현행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하였으며,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도서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.

상위법인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에서는 지역서점의 요건 및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,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

출판문화산업 진흥법

제7조의2(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(이하 “지역서점”이라 한다)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1.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
2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
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(「도서관법」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)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7.>

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21. 8. 10.]